

-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

제 안 설 명 서

2024. 9.



[아동가족과]

-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

제 안 설 명 서

설 명 자: 아동가족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에 따른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수목원풍경채, 풍경그림M어린이집 2개소의 민간위탁 계약기가 만료일 도래에 따른 재계약 추진을 위해
 - O「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 □ 먼저, 재계약 2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수목원풍경채어린이집은 갈밭남로12(대곡동,수목원제일풍경채)에 소재하고, 시설규모 지상1층, 연면적 310㎡, 정원 55명, 현원 50명, 보육교직원 18명이며 2020. 3. 1.부터 2025. 2. 28.(5년)까지 원장 김상숙이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 2021. 1월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 결과 각 영역별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위탁기간 동안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행정 처분내역이 없고, 2020. 11월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 **둘째, 풍경그린M어린이집**은 갈밭남로61(대곡동,수목원풍경그린)에 소재하고, 시설규모 지상1층, 연면적 220㎡, 정원 39명, 현원 38명, 보육 교직원 12명이며, 2020. 3. 1.부터 2025. 2. 28.(5년)까지 원장 정승혜가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 2021. 1월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 결과 각 영역별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위탁기간 내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내역이 없고, 2021. 11월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유지 운영 중입니다.
- 위와 같이, 해당 어린이집 모두 위탁기간 동안 우수한 평가인증을 유지하며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계약을 통해 재원 아동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향후 계획으로 2024년 9월 의회 동의, 11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재위탁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 위원 합산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 현수탁자와 재계약을 결정하고,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 후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 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2024. 9.

제 출 자: 달서구청장

(아동기족과장)

1. 제안이유

- O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른 재계약 추진을 위해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재계약)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O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5조(위탁운영)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O 필요성

-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은 특수한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운영해야 하므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제고 하는데 유리함

다. 위탁사무 내용

- O 어린이집 운영(아동 입소·상담 등 보육, 인사·회계 등)
- O 어린이집 시설 및 물품 등 재산관리

라. 위탁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정원 (현원)	現 운영(원장)	위탁기간
수목원풍경채	갈밭남로12(대곡동,	310 m²	55	김상숙	2020. 3. 1.~
어린이집	수목원제일풍경채)	(지상1)	(50)		2025. 2. 28.
풍경그린M	갈밭남로61(대곡동,	220 m²	39	정승혜	2020. 3. 1.~
어린이집	수목원풍경그린)	(지상1)	(38)		2025. 2. 28.

마. 위탁기간: 5년

- 수목원풍경채어린이집: 2025. 3. 1.~ 2030. 2. 28.
- 풍경그린M어린이집: 2025. 3. 1.~ 2030. 2. 28.
- 바. 수탁자 선정방식: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
- 사.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육분야 전문가(대학교수) 자문
 - O 민간이 가진 보육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구성의 유연함으로 운영의 효율성과 경영의 전문성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고려
- O 지역 내 민간의 공공서비스 참여를 통해 경제적 활성화 및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운영

3. 참고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추진 계획: 붙임 1
- O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의견: 붙임 2
- O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평가인증): 붙임 3
- O 관계법령: 붙임 4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집의 설치) 및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및 제24조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
 -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위탁 운영)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붙임 1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추진 계획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추진 계획

국공립어린이집 現위탁체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우수한 수탁자 재계약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Ι	추진근거
	1 4 4 1

- □ 「영유아보육법」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 □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15조
- □ 보건복지부「2024년도 보육사업 안내」

추진방향 \prod

- □ 재원 아동에게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위탁체와 재계약 추진
- □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 과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위탁시설 현황 \prod

□ 시설혂황

시설명	소재지	원장 규모		정원/현원	현 위탁체
기결성	최초위탁일	위탁만기일		재위탁기간	
수익당 체	갈빝남로12(대곡동,수목원제일풍경채)	김상숙	310m²(지상1)	55/50	개인
어린이집	2020. 3. 1.	2025. 2. 28.		2020. 3. 1. ~ 2025. 2. 28.	
풍경그린M	갈빝남로61(대곡동,수목원풍경그린)	정승혜	220m²(지상1)	39/38	개 인
어린이집	2020. 3. 1.	2025. 2. 28.		2020. 3. 1. ~	2025. 2. 28.

□ 실적평가 요지

O (수목원풍경채어린이집) 정원 55명, 현원 50명, 보육교직원 18명으로 2021년

1월에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위탁기간 5년 동안 지도점검 결과 처분사항이 전혀 없으며, 2020년 11월 열란어란이집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유지·운영 중임

○ (풍경그린M어린이집) 정원 39명, 현원 38명, 보육교직원 12명으로 2021년 1월에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위탁기간 5년 동안 지도점검 결과 처분사항이 전혀 없으며, 2021년 1월 열란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유지・운영 중임

▶ 부서의견

수목원풍경채, 풍경그린M어린이집은 위탁기간 동안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기 중임을 감안하여 재계약을 통해 재원 아동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Ⅳ 세부추진계획

- 가. 위탁기간: 5년 (2025. 3. 1.~ 2030. 2. 28.)
- 나. 위탁체 선정 방법(재계약): 운영현황 및 실적 자체평가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 다. 재계약 대상시설 심사자료 제출
- □ 일 시: 2024. 11.
- □ 장 소: 달서구청 아동가족과 보육팀(별관 6층)
- □ 제출서류:【별첨】참조
- □ 제출부수: 15부(원본 1부, 사본 14부), 발표자료(PPT) USB 별도 제출
- 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및 선정
- □ 심사개요
 - O 일 시: 2024. 11. 24.(예정)
 - O 장 소: 4층 회의실
 - O 심사위원: 달서구 보육정책위원 15명
 - ※ 수탁기관 및 원장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심사위원은 심사에서 배제
 - ※ 사전검토를 위해 심사서류 및 심사기준(안)을 심사일 3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
 - ※ 심사자료 및 개인정보 유출 금지 및 서약서 징구

□ 심사안건: 재계약(수목원풍경채, 풍경그린M어린이집) 건에 대한 심의
□ 심사표 및 평가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및 평가기준안
□ 심사기준

총계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시설 운영 및 사업 실적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공 신 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가산점
102	25	30	30	10	5	2

○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선정하되, 심사결과 평균 점수 80점 이상인 운영체(자)

- ※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 수까지 계산
- ※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 후 변경위탁(공개경쟁)으로 추진
- O 심사주체: 달서구 보육정책위원회
- O 발 표 자: 운영체의 원장
- O 발표내용
 - 재계약 필요성 및 운영계획 소견 등 PPT발표(5분 이내)
 - 발표 후 심사위원 질의응답 및 평가 ※ 발표일시, 발표순서 추후 유선 안내
- O 최종선정: 심사기준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결정

마. 위탁운영 조건 및 기타사항

□ 위탁범위: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전반
---------	------	----	---	------	------

□ 운영조건

-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하고 나머지는 수탁자가 보육료 등에서 충당
- O 보육교직원의 보수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적용
- O 보육료는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적용
- O 계약 후 개원을 위한 시설의 환경조성 기간 중 소요되는 인건비 등 기타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함
- O 수탁운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음
- O 개인수탁자의 경우 위수탁계약일로부터 60일 후에도 타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인 운영(소유자)일 경우 위탁 취소

- O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은 전액 수탁사업 목적에만 사용
- O 「영유아보육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 장아아, 야간연장, 다문화아동 보육 등) 중 2개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
- 수탁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 당해년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위·수탁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해지함
-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승계해야 함
- O 기타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수탁 운영 협약에 의함

바. 기타 유의사항

- 신청 시 現 시설물 상태(내부집기 포함)로 무상임대 하는 조건
- O 영유아보육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 어린이집 관련 규정에 의거 어린이집 설치 기준 준수
- O 심사기준표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O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함
- O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선정 이후 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업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O 위·수탁 기간 중 보조금 지원 기준 요건 미충족 시 보조금 지원 불가

V 향후일정

□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4. 9.

□ 재계약 심사서류 제출 안내 : 2024. 9.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2024. 11. 24.(금)

□ 위·수탁계약 체결 : 2024. 12.

※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의견

□ 전문가(홍희주 계명문화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자문 의견

검토내용	검토결과
1. 다른 시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어린이집 운영은 교육 분야가 강조되는 특수성을 가지며, 유아교육의 특수성을 발휘하기 위해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운영체가 필요함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및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됨 민간위탁을 통하여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공통된 기준과 적용으로 어린이집간의 통일성과 형평성, 교육수준의 전문성을 확보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규정 및 지도·점검, 공통된 운영기준의 적용을 통하여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3. 경제적 효율성	 유아교육 분야 전문성 수준이 확보된 위탁체가 운영함으로써 이에 대한 재교육의 비용 절감 위탁체가 지원금을 지원받아 자립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각 어린 이집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 운영 가능 전문인력 구성과 채용 유연성 확보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민간이 가진 보육에 대한 전문성이 두터우며, 실무와 교육 경력이 운영에 투입되기에 심사를 통해 경쟁력 있는 민간 자원 활용 적절함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위탁체로 선정 기능함
5. 성과 측정의 용의성	 동일 기관, 동일 성과 기준 적용으로 각 기관의 달성도에 대한 비교 측정 용의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정기적으로 보육 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엄격한 평가시스템을 적용받으므로 총제적인 역량 제고 및 발전을 위한 자가체크 및 모니터링 가능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3조(지도감독 및 조치)에 따라 지도점검을 함으로써 시설 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유아교육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위탁체가 충분하며 확보 가능지역내 민간의 지역 공공서비스 참여를 통하여 경제적 활성화 및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운영

□ 전문가(김은혜 계명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자문 의견

- 보육의 공공성 제고에 대한 요구와 사회적 비용 고려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보육 공공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음.
 - 한편 지속, 심화되는 저출산 현상과 어린이집에 대한 현재의 수요-공급 측면(어린이집 폐원 증가)을 고려하여야 함.
 - 또한 유보통합이 심도 깊게 논의되는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정책적 로드맵이 재편되고 있는 과정이므로 관련 정책의 추이에 따라 보육 공공성 제고 방안을 확장해나갈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경제적 비용(기회비용 포함)이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기존의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 하는 민간위탁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탁월한 보육철학과 성실한 어린이집 운영으로 노하우를 쌓아온 전문 자격을 가진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지역의 보육 공공성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효율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과 어린이집 평가, 관리의 연계

- 민간위탁 선정 어린이집은 지금까지의 전문적인 보육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되,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 수혜 받은 지원을 질 높은 보육 서비스에 투입함으로써 보육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민간위탁 어린이집 선정에 필요한 평가 기준 및 관리 지침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 의무평가와 달서구청의 지도를 결합하여 투명한 회계 처리, 우수한 보육 환경, 질 높은 보육 서비스,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피드백에 기초한 보육의 질 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붙임 3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평가인증)

□ 수목원풍경채어린이집

어린이집 명	수목원풍경채어린이집		
어린이집 주소	(42829)대구광역시 달서구 잘발난로 12 (대곡동, 수목원제일풍경채)		
대표자 성명	달서구청장		
🤛 평가결과			
염유아 보육법 제3	O조에 의해 실시한 어린이집 평가결과	물 아래와 같이 동보합니다.	
평가주기	3년		
<u> </u>			
🤛 평가 영역팀	걸 세무내용		
평가기간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20.10) (22.02)	→ 현장평가(20.12) → 종합평가(20.12) → 결과발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영역별 종합의견	
	1-1.영유아 권리 존중 (필수)(2)		
	1-2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6)	영유아의 권리 존중을 필수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표준보 육과정과 어린이집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영유아 중심의 보	
1.보육과정 및 상호작 용	1-3.놀이 및 활동 지원(3)	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놀이(활동) 실행을 평가하 반영하는 순환적 과정을 통해 보육과정의 질을 높이려고	
·	1-4.영유아간 상호작용 지원(4)	력하며 영유아와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5.보육과정 평가(3)	and the second s	
	2-1.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4)		
	2-2.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3)	어린이집은 실내외 공간이 영유아의 연령 및 발달수준, 흥미	
2.보육환경 및 운영 관리	2-3.기관 운영(4)	와 요구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고, 정해진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	
	2-4.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3)	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1.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3)		
	3-2.급·간식(3)	청결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영양적 균형을	
3.건강·안전	3-3.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 리(3)	고려한 급간식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식습관 및 위생 적인 생활습관을 실천하고, 동원부터 하원까지 영유아를 안 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3-4.등 하원의 안전(3)		

□ 풍경그린M어린이집

🦻 평가결과서			
어린이집 명 문	경그린M어린이집		
어린이집 주소 (4	(42829)대구광역시 달서구 갈밭남로 64 (대곡동, 수목원풍경그린)		
대표자 성명 들	·서구청장		
평가결과 영유아보육법제303 평가주기	E에 의해 실시한 어린이집 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동. 3년	보합니다.	
평가 영역별	세부내용		
평가기간		병가(20.12) → 종합평가(20.12) → 결과발표(22.02)	
평가영역	평가지표	영역별 종합의견	
	1-1.영유아 권리 존충 (필수)(2)		
	1-2.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6)	영유아의 권리 존중을 필수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표준보육과정과 어린이집의 1	
1.보육과정 및 상호작원	8 1-3.놀이 및 활동 지원(3)	학을 바탕으로 한 영유아 중심의 보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놀이(활동) 평가하고 반영하는 순환적 과정을 통해 보육과정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하며	
	1-4.영유아 간 상호작용 지원(4)	와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5.보육과정 평가(3)		
	2-1.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4)		
2.보육환경 및 운영관	2-2.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3)	어린이집은 실내의 공간이 영유아의 연령 및 발달수준, 흥미와 요구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고, 정해진 규정 및 지참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정·지역사	
	2-3.기관 운영(4)	회와의 연계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4.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3)		
	3-1.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3)		
	3-2.급-간식(3)	청결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영양적 균형을 고려한 급간식을 제공	
3.건강·안전	3-3.건강종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3)	장말이고 한단한 모속된 이글 자꾸보 사고려. ㅎㅎ 또 한당을 모더한 답단국을 제하 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식습관 및 위생적인 생활습관을 실천하고, 동원부터 하원까 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3-4.등·하원의 안전(3)	THE STATE STATE AND THE	
	3-5.안전교육과 사고예방(3)		
	4-1.원장의 리더십(3)		
A TEIRI	4-2.보육교직원의 근무한경(3)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돕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마련하여 교직원의 직무만족도	
4.교직원	4-3.보육교직원의 처우와 복지(3)	를 향상시킴으로써 영유마에게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니다.	

붙임 4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 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1. 일반기준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5조(위탁운영)

- ①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 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은 영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을 실시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재위탁(위탁운영자 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하거나 공개경쟁의 방법을 적용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3. 경제적 효율성
 -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 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위탁사무명
 -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3. 위탁사무 내용
 -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5. 민간위탁기간
 - 6. 수탁자 선정방식
 -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8. 재계약 시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또는 감사결과
 -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